

2013. 04. 02.(화) 11:00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경기도 식당산업과 근로자를 위한
“참좋은 식당” 조례제정을 준비하며



보 건 복 지 공 보 위 원 회

(민주통합당 : 고양 5)

의 원 김 유 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유임의원입니다.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식당산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식당산업 업무가 몇 곳에 산재되어 있고 시장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준비단체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는 14만9천개의 식당에서 142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영업자, 종사자, 소비자가 대체로 지역에 거주하며 영업과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이익이 지역내에서 순환되는 대표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점은 비공식부문과 다름없을 정도로 영세하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음식점의 난립으로 인한 업소간 과다경쟁은 열악한 일자리, 먹거리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잦은 휴·폐업은 영업자와 종사자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업 종사자의 대부분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취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업주는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한 중장년여성과 이주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출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 좋은 식당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생산력 유지를 위해 주부노동력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집밖의 건강한 먹거리 해결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시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와 노동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다시 좋은 먹거리와 노동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인간적인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체적 경제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관리,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식당영업자의 안정적인 소득도, 노동자의 인권적인 노동환경도,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먹거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재 조직함으로써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조례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위임된 법령 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당산업에 대한 정책의지를 점검하고 지역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원리를 확산하는 것이 조례의 목표입니다.

이번 개편된 정부조직에는 농정국의 식품산업 육성, 보건복지국의 음식문화, 안전사업이 식품의약처(청→처)로 확대되어 업무의 집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업무의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개편이 되길 바랍니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음식점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영업자-종사자-소비자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화된 음식점, 즉 “참 좋은 식당”을 지정하고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식당”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친화적, 지역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환경친화적,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사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과 두루 협력하는 지역친화적 식당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식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모범음식점, 경기 으뜸맛집, 착한가격업소 등을 지정하고 있지만 지자체, 영업주, 소비자에게 큰 실익이 없는 앙상한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식당이 내는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 식품진흥기금의 이자재원의 한계, 인력의 태부족, 무엇보다 경제산업, 일자리정책과 연계되지 못한 업무분장의 한계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식당을 지역경제 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육성, 관리하는 정책의지도 대안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몇 개의 식당을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설립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법인전환, 사회연대은행 자금연결 등 방안들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적은 인력으로 애쓰시는 보건복지국의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

《 조 례 》

1. 주요내용

-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 환경 조성에 모범이 되는 음식점을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육성하며, 음식점 고용 환경 개선, 종사자 권익 보호,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할 책무를 지님.
- 지자체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업자와 종사자, 지역 주민, 그 외 노동·인권·환경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고루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참 좋은 식당」 지정과 육성·지원, 관련 시책 등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특정 단체 소속으로 종사자,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두 부분의 위원은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음식점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음식점에 한함.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영업자는 지자체에 지정을 신청하며,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역 주민과 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경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영업자의 신청이나 주민,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 세부기준 평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함.
- 지정기준은 △노동친화(양질의 일자리) △환경친화(건강한 먹거리) △상호존중 환경(종사자 이용자 편의제공) 세 가지 항목에 따른 세부기준으로 하며 지역친화 항목에 부가점수를 부여, 각 항목별 기준 점수 및 총점 기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함.

- 지자체는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고 영업자의 경영자금이나 홍보 및 이용권 발행을 통한 매출 증대를 지원하며, 종사자 복리후생 증진과 교육,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업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지정기준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관리·감독해야 함.

2. 의의 및 기대효과

- 노동-건강 의제의 결합과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 형성

「참 좋은 식당」 조례는 지역사회 의제로 노동권과 건강권의 이슈를 결합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차원의 실천과 먹거리 생산·공급의 대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조례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문제를 다뤄진 노동권 보장을 지역사회 주체들이 당사자의 문제이자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는 결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이면서 소비자이자 영업자인 지역 주민으로서 중층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체들이 기존의 노사관계와 다른 차원의 관계 맺기를 통해 노동인권을 실현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또 「참 좋은 식당」 조례는 생활협동조합 등 대안적인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온 지역운동과 결합될 수 있다.

그동안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은 주로 개별 가족 내의 먹거리 문제로 다뤄져 왔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많은 끼를 집 근처 또는 직장 근처에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맞벌이 가구,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가정 밖에서도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신뢰 관계를 매개로 음식을 생산·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안전 문제는 먹거리 관련 지역 운동의 바깥에 놓여 있었지만, 이 조례는 이러한 지역운동과 (여성)노동운동이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교차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례는 이처럼 좋은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여러 지역사회 주체들의 모색과 실천이 지방정부를 경유한 민관 합동 기구를 통해 구현되도록 하며, 여기서 축적된 성과는 하나의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중앙정부 정책이나 업종 전반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좋은’ 음식점의 새 기준 마련 :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 대체

그동안 지자체의 음식점 관련 행정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주로 보건·위생 관련 교육과 점검에 국한되어 왔으며, 음식점 노동자의 문제도 위생 관리 차원(청결 유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 검진 등)에서만 다루어져 왔다. 물론 노동 관련법의 규율은 노동부가 관장하지만 영세한 음식점들은 대부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음식점 노동자의 노동인권은 사실상 어디서도 제대로 규율되지 못했다. 단기간 내 이러한 행정 관행을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참 좋은 식당」 조례는 기존의 음식점 관리 행정의 일환이자 지역 차원의 산업 진흥책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를 차용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범적인’ 음식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청결과 이용편의, 서비스 수준의 갖춘 음식점을 인증하여 운영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홍보로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현재 제도 자체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모범음식점 인증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선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자에게도 음식점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모범 음식점 제도가 기초적인 위생 시설 관리와 관광 활성화라는 목적 하에 탄생한 것으로, 오늘날 소비자, 영업주, 종사자 그리고 지자체 모두의 필요와 욕구를 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 좋은 식당」 조례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소비자, 영업주, 종사자는 물론 여러 지역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음식점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 음식점 지정 제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각종 음식점 관련 시책을 새롭게 재구성하는데 기초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참 좋은 식당 지정과 지원

- 노동 친화적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 사항
 - 사회 보험 가입 정도, 휴일·휴가·휴게시간 보장 정도,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복리후생제도 시행수준
 - 환경친화적 음식점 운영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친환경 세제·소독제 및 식기 사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
 - 우수 농산물 사용, 적정 조미료 사용, 적절한 식자재 관리 등
 - 영업자·종사자·소비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각종 편의 제공
 - 업소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 종사자·소비자와의 상호존중 및 소통을 위한 노력
 - 영업 개시 및 마감 준비시간 운영
 - 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 소비자 편의시설 설치 수준
- 위 항목별 배점은 양질의 일자리(노동친화) 40점, 건강한 먹거리(환경친화) 30점, 상호존중 문화 조성(편의 제공) 30점으로 하며, 지역친화 항목에서 가산점을 부여함. 적합 기준은 3개 항목별 배점의 50퍼센트 이상,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으로 함. (세부적인 적합 기준은 평가표, 심사표에 명시)
- 「참 좋은 식당」 지정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 간 지정업소로서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 이는 지정 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번의 심사로 장기간 지정업소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관리 책임을 소홀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단, 한번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업소는 심사 단계를 보다 간단하게 하여 계속해서 지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함.
- 「참 좋은 식당」 지정 규모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일반음식점업체 수의 5%내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

- 지정심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지자체 관할 부서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경우로 하나, 주민 다수의 추천을 받았거나 위원회 위원이 발굴·추천한 경우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심사는 1차적으로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안전을 상정, 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의결하도록 함. 지자체 자체평가 시 노동기본권 준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의 시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노동고용청 및 노동고용사무소,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여 세부 지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지자체가 그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참 좋은 식당」에 대한 지원은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영업자 경영 지원 △홍보 및 이용권 발행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 △종사자 복리후생 및 교육지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업소 환경 개선 지원으로 나누고,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의 예시를 바탕으로 지자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

1. 영업자 경영지원

-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의 우선 대상으로 함.
- 대출 이자 감면, 신용대출 보장 등 추가 혜택 부여

2. 매출 증대 지원

- 시 홈페이지, 시보,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사례로 「참 좋은 식당」 지정업소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음식점 이용권 발행 및 취약계층 지원: 지정 업소에서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 이용권(바우처)을 발행하여 관공서에서 활용하고, 저소득층 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

3. 종사자 복리후생 및 교육지원

- 영업자 종사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 7월부터 시행된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에 따른 지원에 더하여 추가 지원 (예/건강보험료 지원,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종사자 부담금의 반액 지원 등)
-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4. 업소 환경 개선 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 구입 및 설치비 보조: 이동식대차 구입, 미끄럼방지 스티커 부착, 보호장갑·보호경 구입 지원등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구입 지원: 음식물 쓰레기 순환 재활용을 위한 설비 지원 등
- 전기료 절감을 위함 LED 조명 지원
- 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식기 구입 지원

5. 기타 (식품위생법 모범업소 예규 상 모범 음식점 지원 내용의 예시)

-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기금 조례도 함께 개정함. 식품진흥기금은 1985년 처음 조성된 후 2000년부터는 시도 및 시군구로 배분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을 주 수입원으로 함.

○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이 기금을 주로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모범업소 육성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자금 등으로 저리에 융자하고 있으나, 대출에 필요한 신용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주로 건물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하는 영업자들이 융자를 얻어 시설 개선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활동도가 높지 않은 편임.

【참고2】

《 경기도 식당 현황 》

□ 시 · 군별 식당현황

(2012.12.31현재. 단위:개소)

시군명	합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합 계	149,696	119,781	16,839	3,513	1,819	5,583	2,161
수원시	13,282	10,652	1,550	355	134	454	137
성남시	10,817	8,317	1,559	300	181	328	132
부천시	9,897	7,799	1,155	262	132	454	95
안양시	7,291	5,660	885	194	108	385	59
안산시	9,035	7,151	833	198	142	404	307
용인시	9,066	6,872	1,450	266	62	211	205
평택시	6,828	5,096	666	120	85	639	222
광명시	3,059	2,336	346	81	61	218	17
시흥시	5,104	3,844	738	81	42	294	105
군포시	2,565	2,038	285	68	44	108	22
화성시	7,903	6,363	896	169	51	191	233
이천시	3,438	2,899	249	70	43	98	79
김포시	3,199	2,714	296	87	24	47	31
광주시	3,368	2,923	289	52	40	32	32
안성시	3,304	2,715	332	55	18	86	98
하남시	1,657	1,422	148	35	17	26	9
의왕시	1,354	1,099	157	47	8	13	30
오산시	2,453	1,969	215	46	38	147	38
여주군	2,279	1,918	207	36	40	49	29
양평군	1,879	1,581	182	18	21	72	5
과천시	593	453	92	21	4	5	18
고양시	10,528	8,647	1,282	295	121	112	71
의정부	5,497	4,339	611	147	122	265	13
남양주	6,095	5,084	657	167	65	94	28
파주시	5,169	4,248	550	112	39	144	76
구리시	2,586	1894	379	63	52	190	8
포천시	3,781	3240	282	49	47	144	19
양주시	3,219	2845	196	58	38	56	26
동두천	1,600	1264	100	31	21	177	7
가평군	1,822	1,577	138	17	13	68	9
연천군	1,028	822	114	13	6	72	1

□ 모범음식점 및 경기 으뜸맛집 지정현황

○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2012.12.31.현재. 단위 : 개소)

시 · 군	계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부페식	기타
총 계	3,398	2,628	162	235	112	42	82	137
본청 계	2,390	1,805	116	202	72	29	69	97
수원시	295	240	18	18	7	0	6	6
성남시	301	226	16	37	6	1	9	6
부천시	148	110	2	13	6	0	13	4
용인시	197	128	9	6	6	1	3	44
안산시	202	154	10	13	4	5	10	6
안양시	128	98	9	11	4	0	5	1
평택시	136	91	7	12	8	10	6	2
시흥시	111	81	6	22	0	0	2	0
화성시	73	59	6	5	3	0	0	0
광명시	75	51	5	14	0	0	3	2
군포시	89	76	3	7	1	0	2	0
광주시	67	60	3	3	1	0	0	0
김포시	93	70	5	9	7	1	1	0
이천시	103	58	2	8	5	5	1	24
안성시	65	53	3	5	4	0	0	0
오산시	37	23	2	2	1	3	6	0
하남시	39	31	2	4	2	0	0	0
의왕시	48	37	5	2	3	0	1	0
여주군	82	73	0	6	2	1	0	0
양평군	66	62	1	2	0	0	1	0
과천시	35	24	2	3	2	2	0	2
북부청 계	1,008	823	46	33	40	13	13	40
고양시	304	220	23	15	9	6	3	28
의정부시	93	72	2	7	4	5	3	0
남양주시	148	138	1	3	4	0	2	0
파주시	76	60	4	3	6	0	0	3
구리시	87	67	5	3	1	0	2	9
양주시	97	84	3	1	6	2	1	0
포천시	106	98	4	0	4	0	0	0
동두천시	29	24	1	1	3	0	0	0
가평군	34	32	1	0	1	0	0	0
연천군	34	28	2	0	2	0	2	0

○ 경기 으뜸맛집 지정 현황

(2012.12.31.현재. 단위 : 개소)

선정년도 시·군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계	153	22	30	32	34	22	13
수원시	11	2	3	2		3	1
성남시	8	2	2	2	1	1	
부천시	7		1		3	1	2
안양시	5		2		2		1
안산시	8	1	3	2	1	1	
용인시	10	1	3	2	2	1	1
평택시	4			3	1		
광명시	2	1	1				
시흥시	3	1			1		1
군포시	2				2		
화성시	2		1		1		
이천시	3		1		1		1
김포시	5		1	2		2	
광주시	7	1		2	1	2	1
안성시	5	1	2	1		1	
하남시	2		1		1		
의왕시	2				2		
오산시	5	1		1	2		1
여주군	2		1		1		
양평군	6	1		4	1		
과천시	5	1	1	2		1	
고양시	9	2	2	1	4		
의정부	2	1				1	
남양주	5	1	1	1			2
파주시	11			3	3	4	1
구리시	2	1		1			
포천시	9	2	2	1	2	2	
양주시	7		1	2	1	2	1
동두천	1	1					
가평군	1				1		
연천군	2	1	1				

□ 지원내용 및 법적근거

항 목	모범음식점	경기 으뜸맛집
지정기관	시·군	경기도
지정업소	3,398개소	153개소
사업목적	○위생적이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조성	○경기도를 대표하는 향토·전통·특색 음식점 발굴·육성 ○경기음식 우수성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정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 · 모범업소의 지정 등)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2012.08.28,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836('05.3.29) 「전통음식 육성」 추진계획 통보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50950('05.10.12) 「맛갈스런 전통음식점 발굴·육성계획」
신청자격	○개업 후 6개월 경과, 지정취소 후 2년 경과	○개업 후 1년 경과 향토·특색음식점
지정기준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맛 60%, 위생·시설·서비스 등 40%
지정방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신청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현지조사 및 심의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현장심사
사후관리	○연 1회 재심사 ○좋은식단 이행여부 연1회 이상 점검	○연 2회 모니터링(시·군) ○3년 1회 재심사(도)
지원내용	○지정증, 표지판 배부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2년간) ○상수도·지하수 수질 검사비 지원(시·군) ○우수 모범업소 1/3, 50만원 상당의 위생물품 지원(도50%, 시·군50%) ○홈페이지, 책자, 홍보물 등 지원	○지정증, 표지판 배부 ○업소당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 ○주방화상공개, 영양표시, 식품안전정보 시스템 지원(안심식당 시범사업) ○국제박람회 등 각종행사, 홈페이지, 책자, 홍보물 등 지원

【참고3】

《 식당 노동자 현황 》

시·군	근로자수			비고
	합계	남	여	
계	1,422,992	490,956	932,036	
수원시	136,648	48,056	88,592	
성남시	127,744	46,216	81,528	
부천시	102,092	35,612	66,480	
용인시	83,496	29,476	54,020	
안산시	85,036	28,108	56,928	
안양시	82,536	27,472	55,064	
평택시	59,912	19,476	40,436	
시흥시	48,404	15,568	32,836	
화성시	67,008	23,396	43,612	
광명시	30,828	10,532	20,296	
군포시	27,032	9,080	17,952	
광주시	30,048	10,252	19,796	
김포시	29,396	9,572	19,824	
이천시	28,256	9,332	18,924	
안성시	25,076	8,796	16,280	
오산시	23,376	7,668	15,708	
하남시	17,776	6,260	11,516	
의왕시	14,748	4,932	9,816	
여주군	15,824	5,012	10,812	
양평군	14,696	4,412	10,284	
과천시	9,500	3,028	6,472	
고양시	110,900	41,020	69,880	
남양주시	51,372	18,136	33,236	
의정부시	50,124	17,532	32,592	
파주시	43,108	15,312	27,796	
구리시	26,612	9,144	17,468	
양주시	22,596	7,964	14,632	
포천시	26,076	8,984	17,092	
동두천시	13,708	4,340	9,368	
가평군	12,456	4,184	8,272	
연천군	6,608	2,084	4,524	

※ 근거 :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 참고(자료제공 : 경기도 비전담당관)